

작성 하윤금 /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 (hayk@kocca.kr)

2014. 12. 15.

2014-10호(통권 87호)

‘구글세’(Google Tax) 동향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 I. 서론
- II. 구글세 추진 배경과 개념
- III. 해외 각국의 구글세 도입 현황
- IV. 구글세의 한계와 OECD의 BEPS 프로젝트
- V. 국내의 구글세 동향
- VI. 결론



KOCCA
FOCUS

요약

- 세계 각국은 콘텐츠산업을 육성,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구글세’, 문화세, 인터넷광고세 등 다양한 조세 형식을 통해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경필의원에 의해 유럽의 ‘구글세’와 ‘문화세’등을 통해 ‘광고콘텐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에 관하여 추진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
- 구글세가 추진된 배경은 유럽 각국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구글의 독과점 문제제기로 인한
 -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각국내,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어나 구글이 패소하는 사태 발생.
 - 이는 유럽 각국들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부재와 콘텐츠 기업들의 수익 저하 문제와 직결됨.
 -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구글, 애플 등의 조세 회피 문제 제기
- ‘구글세’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됨: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와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구글세’는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문, 출판 등 콘텐츠산업의 지원 기금을 위한 재원으로 논의됨
 -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논의는 독일, 스페인의 경우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였고, 벨기에, 프랑스의 경우는 구글과 콘텐츠산업을 위한 기금 마련안에 합의.
 -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한계에 봉착.
-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발의에 의한 OECD의 BEPS 프로젝트에 의해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세계적으로 공론화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
 - 이 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공론화 됨: 첫째, 직접세인 법인세 문제, 두 번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문제
 - 법인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세법상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많은 시간과 절차 필요, 하지만 부가세 문제는 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
- 국내의 경우, ‘구글세’논의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음
 -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이미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들에 콘텐츠사용료 지급, 하지만 구글의 경우 미지급.
 -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 기재부의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의 앱 시장에서 부가세 징수 예정, 하지만 법인세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고 있지 않음.
 - 위의 두가지 관점의 ‘구글세’에 대한 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가 요구됨
- 2015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부가가치세 징수와 여론 조성을 통한 구글 등의 법인세 과세, 그리고 저작권료 혹은 콘텐츠사용료 관점의 ‘구글세’징수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I. 서론

- 세계 각국은 콘텐츠산업을 육성,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그 중 유럽 각국의 경우 ‘구글세’, 문화세, 인터넷광고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력 중.
 - 유럽 각국들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구글세’논의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저작권 보호, 디지털화 등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유통에 관련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려고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불발됨.¹⁾
 - 이에 2013년 10월 남경필의원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럽의 ‘구글세’와 ‘문화세’²⁾ 등을 통해 ‘광고콘텐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음.³⁾
-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에 관하여 추진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

II. ‘구글세’(Google Tax) 추진배경과 개념

1. ‘구글세’의 추진 배경

- 유럽 각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구글, 야후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구글 검색사업의 검색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해 EU와 자국 법원에 제소하는 사태가 빈발
 - 영국의 가격비교 사이트 Foundem,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의 Ciao, 프랑스 법률정보 검색사이트 eJustice 등 3개 업체, 그리고 그 후에도 여행전문 사이트 Expedia, 영국 온라인 지도 사업자 Streetmap 등은 구글이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부당한 독점행위를 했다고 EU에 공식 제소
 - 특히 유럽 신문사 중심으로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일어났는데, 특히 벨기에 언론협회인 Copiepresse는 2006년 구글의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없이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소송을 제기
-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연합이나 유럽 각국은 구글에 패소 판결 도출
 - 벨기에의 경우 위의 소송에 대해 2007년 벨기에 법원이 언론사의 사전 허락없이 Google News를 통해 기사

1) 전자신문, “상상콘텐츠기금과 공제조합 사업 재조명해야”, 2013.10.15

2) 프랑스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 자국에서 팔리는 전자책 리더, 모바일 기기, 게임기 등에 부과하고자 하는 세금을 ‘문화세’로 명명함.

3) ZDNet Korea, “남경필 · 이경재, 구글에 세금 걸자”, 2013.10.15

를 노출시킬 수 없다며 Google에 패소 판결을 내림.⁴⁾

- EU는 2010년 7월부터 3년 동안 구글의 검색 중립성 문제에 대해 불공정 혐의의 조사 진행, EU 경쟁당국은 구글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글이 제시한 개선안을 받아들여 합의 종결(2013. 4)했으나 유럽 각국의 반발은 계속⁵⁾

○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글의 독과점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 벤더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구글의 서비스 이용규정이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해 2013년부터 Microsoft, FairSearch 등 17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 2013년 유럽위원회(EC)에서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⁶⁾

- 최근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Aptoid)도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EU에 제소(2014. 6)하는 등 EU 내 구글의 시장 독점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마찰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유럽 각국들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부재와 콘텐츠 기업들의 수익 저하 문제와 직결됨.

- 유럽은 인터넷, 모바일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기업이 부재하여 미국 중심의 구글, 야후,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에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디지털 전환이 늦은 인쇄매체 중심의 신문, 출판 콘텐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⁷⁾

○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구글, 애플 등의 조세 회피 문제 제기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의 고갈 속에서 세계 각국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인터넷, 디지털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를 문제 삼기 시작했음

- 법인세율이 평균 20~30%인 유럽에서, 영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영국 매출액 32억 파운드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매출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조세 회피 문제를 지적⁸⁾

- 프랑스⁹⁾, 독일¹⁰⁾, 호주도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법인세율이 적은 아일랜드 등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수법인 ‘Double Irish Dutch Sandwich’¹¹⁾ 전략으로 조세 회피를 한다고 비난¹²⁾

○ 이와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에 직면하여 유럽 각국은 이를 ‘구글세’라는 명목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시장 변동과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콘텐츠 산업계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동향과 전망’, 통권 제63호, 2013. 06

5) 최근 들어 글로벌기업 NewsCorp.이 다시 구글의 검색 기능이 이용자들을 구글의 상업적 이익에 부합하는 산하 사이트로 유도하여 경쟁을 저해한 다며 EU 반독점기구에 개선안 요구, cf.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2014. 10. 06

6)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를 개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단말 벤더에게 검색, 지도, YouTube, Play Store 등의 서비스를 기본 탑재 하도록 강요하고 유사한 타 서비스는 불허함. cf.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2014. 02. 25

7) 유럽의 대표적인 미디어기업 NewsCorp.의 경우도 수년간 지속된 신문, 출판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주주들로부터 분사 압박을 받아오다 2013년 6월 영화,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과 출판사업 부문을 각각 21st Century Fox와 NewsCorp.로 분사한 상태. cf.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2014. 10. 06

8) 안종석,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07

9) 프랑스 정부도 구글이 프랑스에서만 13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지적

10) <http://bigstory.ap.org>, “Google faces up to image problem in Europe”, 2014. 05. 30

11) 자세한 설명은 다음 참조, 안종석, 위의 글, p.8

12) <http://theregister.co.uk>, “Australia to reveal tech giants’tax tricks”, 2013. 04. 03

성하려 시도 중.

- 프랑스의 경우 ‘구글세’와 ‘문화세’¹³⁾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산업 디지털 혁신 기금을,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구글세’를 법제화하여 신문, 출판산업 및 저작권 산업을 지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2. ‘구글세’의 개념

○ ‘구글세’의 개념은 현재 두 가지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음.

1) 저작권료 관점의 ‘구글세’

- 먼저 유럽에서 구글 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독점 행위에 대해 각국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특히 뉴스 기사검색을 통해 트래픽 유발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콘텐츠 저작권료 내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이를 ‘구글세’로 명명함.¹⁴⁾

2)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① 직접세¹⁵⁾ 관점: 구글, 애플 등의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국 법인들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을 세율이 높은 나라 법인들에서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설립한 법인으로 몰아 세금을 줄이는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통해 세금을 회피(tax planning)하는데 대해 이를 세금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글세’로 명명함.¹⁶⁾
- ② 간접세¹⁷⁾ 관점: 최근 들어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앱 등의 역외 판매에 대해 소비지국을 중심으로 판매세(Sales Tax), 소비세(Consumption Tax), 부가세(Value Added Tax)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글세’로 부르기도 함.

○ 위의 두 가지 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로서 이들에 부과하고자 하는 세금을 통칭하여 ‘구글세’로 부름.

13) 프랑스는 ‘구글세’를 ‘문화세’의 개념으로 변경. cf. 김영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산업진흥 기금: 상상콘텐츠 기금과 프랑스 ‘문화세’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vol. 14, no. 2.

14)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15)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해당. cf.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16) The Guardian, “What is the ‘Google tax’?”, 2014. 9. 29.

17)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cf.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III. 해외 ‘구글세’추진 동향

1. 프랑스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 프랑스 뉴스매체, 언론협회 등의 구글에 대한 저작권 소송 제기
 - 프랑스에서는 2005년 대표적인 뉴스매체인 AFP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개별 신문사 차원의 유사 소송과 프랑스 언론협회(IPG) 차원의 집단 대응이 이어짐.¹⁸⁾
 - 그 결과 2012년 10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과와의 면담을 통해 콘텐츠 이용료 및 사이트 접속료 지불 계약에 대한 해결책 요구
- 2013년 2월 1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구글과 공식 합의에 이룸
 - 구글은 프랑스에서 구글세 신설을 막기 위해 ‘종이매체의 디지털 매체로의 진화 지원’을 위한 6,000만 유로(8,2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출판혁신 펀드’(Digital Publishing Innovation Fund) 조성에 합의¹⁹⁾

2)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프랑스는 2010년 구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세’(일명 ‘구글세’) 도입을 시도함²⁰⁾
 - ‘온라인 광고세’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구글 프랑스 지사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비난하면서 도입을 주장한 것
 - 프랑스 정부는 구글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에 근거를 둔 회사(France-based company)가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경우 온라인광고 서비스에 대해서 광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의 1%를 온라인 광고사업자에게 조세로 부과하는 ‘온라인 광고세’(간접세) 도입을 결정함.
 - 2010년 12월 29일 ‘온라인 광고세’의 신설이 포함된 2011년 재정법(2011 Finance Act)이 프랑스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통과함
- ‘온라인 광고세’의 세수는 5,000만 유로로 예상되었으며 이중 4,500만 유로가 구글에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2010년 1월 6일에 문화부 장관은 예술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 기반 사업을 지원하여 관련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산업 지원기금을 마련하는데 ‘온라인 광고세’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온라인 광고세’의 문제점
 - ‘온라인 광고세’에 대해 외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광고회사(구글 등)는 조세회피가 가능하여 실제 세부담은 중소형 광고회사에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였음.²¹⁾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동향과 전망’, 통권 제63호, 2013. 06

19) “프랑스 정부는 기금이 소진되면 다시 구글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에도 구글에게 지속적인 재원 부담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cf. 김영재, 위의 글.

20) 세계법제정보센터, 서유럽, 프랑스,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

21) 구글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로컬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음.

- 구글의 경우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구매 장소를 외국(특히 아일랜드 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 광고회사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
- 프랑스의 ‘온라인 광고세’도입 계획 철회
 -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예산 장관은 2010년 11월 15일 구글세의 시행을 2011년 7월 1일로 미룰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필립 마리니 상원의원은 2011년 6월 22일 구글세로 불린 온라인 광고에 대한 과세방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이후에도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해결방안 모색

2. 독일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 독일은 저작권법(Leistungsschutzrecht) 속의 ‘구글세’관련 법안 국회 통과
 - 2012년 독일은 저작권법 속에서 ‘구글세’관련 법안 발의, 2013년 3월 하원과 상원 통과, 법제화 됨.²²⁾
 - 이 법은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업자가 일정 정도 길이 이상의 뉴스 콘텐츠의 발췌(news extracts)를 노출시킬 경우 그에 대한 로열티를 저작권자에게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보조저작권(ancillary copyright)’ 개념이 깔려 있음
 - 하지만 이 법은 뉴스 콘텐츠의 ‘발췌’가 뉴스 제목인지, 어느 정도 길이를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유, 무료 저작권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여 논란이 됨²³⁾
 - 이 법의 통과 후 구글은 독일 뉴스 저작권자들의 뉴스콘텐츠를 Google News에서 지우고, 다시 종전처럼 아무런 보상없이 Google News의 리스트에 등록되기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가 신청을 함.
- 독일에서 구글을 대체할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부재로 인한 정보의 흐름 저해, 후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성장을 막는 부작용의 가능성 초래 지적
 - 이로서 독일의 ‘구글세’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독일 정부는 계속적으로 구글의 독과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3. 스페인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 스페인은 독일의 선례를 따라 2014년 10월 30일 새로운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개정안을 통과시킴.
 - 스페인에서도 오랫동안 신문사업자들이 구글이 아무런 보상없이 뉴스를 무단 사용한 것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계속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²⁴⁾
 - 스페인의 최대 신문협회인 AEDE는 Canon AEDE를 통해 ‘구글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4

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동향과 전망’, 통권 제63호, 2013. 06

23)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royalty-free) 단어, 문장의 길이는 어디까지 인가? 등의 문제.

24) Julio Alonso, “The Story of Spain’s Google Tax”, 2014. 07. 27. in <https://medium.com/@JulioAlonso>

년 7월 22일 하원, 2014년 10월 17일 상원 승인을 거쳐 10월 3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음.

- 스페인 정부는 뉴스 콘텐츠 발취(news extracts)의 범위와 길이 등의 불명확한 문제로 ‘구글세’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패한 독일의 경험을 거울삼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스페인은 아예 뉴스 콘텐츠 발취(news extracts)도 저작권과는 ‘떨어질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 ‘derecho irrenunciable’)라는 개념을 법안에 넣고, 이를 이용한 제3자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은 또 만약 저작권료 지불없이 뉴스를 발취하거나 링크를 걸 경우 30만 유로에서 6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음²⁵⁾
 - 스페인의 경우 수익 악화로 고전 중인 스페인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법안 통과 후 신문업계가 8000만 유로(약 108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²⁶⁾

4. 호주

1)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호주에서는 2011년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Malcolm Turnbull에 의해 10억 달러~1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호 주시장에서 올리는 구글이 법인세는 781,461달러 밖에 내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공론화 함.²⁷⁾
 - 이에 대한 구글의 답변 거부로 호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 착수
 - 이때부터 소득세법(income tax) 속에 국경을 넘는 이전가격(cross-border transfer pricing) 관련 규정을 엄밀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OECD의 이전가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규정을 3년여에 걸쳐 실효성 있게 계속 개정함²⁸⁾
- 이후, 호주 구글의 법인세는 2012년 620만 달러, 2013년 707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10배로 뛰었음.
 - 하지만 아직도 구글 호주의 검색서비스 매출은 호주가 아닌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려짐²⁹⁾

5. 일본³⁰⁾

1)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일본은 해외기업(구글, 애플 등)의 일본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에 대해 소비세(Consumption tax) 부과 방침을 밝힘.
 - 이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서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책, 음악에 대해 2015

25) The Guardian, 2014. 10. 31

26) 조선일보, 2014. 08. 21

27) The Sydney Morning Herald(smh.com.au), “Google Australia’s tax bill jumps tenfold”, 2014. 05. 01

28) Bernard Pulte,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 Australian Government initiatives to avoid erosion of corporate tax base”, Parliament of Australia.

29) OECD’s head of tax Pascal Saint-Amans의 지적. cf. The Sydney Morning Herald(smh.com.au), “Google Australia’s tax bill jumps tenfold”, 2014. 05. 01

30) 박종수, ‘플랫폼 산업에서의 규제 형평성 확보 위한 정책 제언’,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4. 09. 18

- 년부터 새롭게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세 부과 대상을 ‘국내거래’와 ‘물품 수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기업의 콘텐츠 판매는 세관을 경유하지 않아 ‘국외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새로운 소비세 과세 기준은 현재의 ‘서비스 제공기업의 소재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처’로 변경되며, 해외의 세무 당국과 긴밀한 공조 추진 예정
- 세금 부담의 차이가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본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플랫폼 시장에서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을 세제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 대등한 경쟁조건이 조성되도록 정비.

IV. ‘구글세’의 한계와 OECD의 BEPS³¹⁾ 프로젝트

1. ‘구글세’의 한계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 유럽 각국에서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 독일, 스페인 등은 법제화가 최근에 이루어졌으나 독일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스페인은 법제화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구글세’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음.
 - 벨기에, 프랑스 등은 구글과 기금(fund) 마련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단계
- 유럽에서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논의는 계속 진행 중
 - 현재 유럽연합 의회에서 구글 검색서비스를 다른 상업적 서비스와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가결하여 다시 이 문제는 유럽연합과 구글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쟁점화 될 예정.³²⁾
 - 앞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구글의 독점 문제가 다시 부각되어 쟁점화 될 전망

2)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최근 들어 ‘구글세’ 징수 움직임은 조세 회피 관점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조세 회피의 문제는 각국의 조세관련 법과 국가 간 협정 등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나 조세 체계는 각국의 내재적, 외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풀리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
 - 이에 OECD를 중심으로 각국의 합의 도출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OECD 프로젝트가 BEPS Action Plan Project 임.

31) BEPS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 잠식과 이익 이전)의 약어

32) 조선비즈, 2014. 11. 27

2. OECD의 BEPS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금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등의 증세 노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구글, 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의 낮은 실효세율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BEPS, 세원 잠식과 이익 이전)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
 - 영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의 성격³³⁾
 - 특히 디지털 경제하의 다국적기업들인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은 해외 각국들 간의 조세 관련법, 협정 등을 이용하여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축소하여(tax planning) 세금 탈루
 -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면서 온, 오프라인 영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B2B, B2C, C2C 등)에 따른 사업 형태가 가능해지면서, 물리적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이도 타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주지국에도 과세되지 않는 사업구조가 발생함.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빠른 발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세 체계 미비의 문제점을 국가간 공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2) 추진 경과³⁴⁾

- 2012년 6월 OECD 재정위원회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종합적 Action Plan을 마련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
 - 2012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
 - 2013년 2월 OECD는 BEPS 실태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보고서 작성,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 2013년 4월, OECD는 종합적 Action Plan 1차 초안 제시
 - 2013년 7월, OECD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종합적 Action Plan을 완성하여 발표
 -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 G20 회원국들의 승인
- OECD는 BEPS Action Plan을 위한 Task Force를 2013년 9월 설립.
 - 2015년 12월을 최종 추진시한으로 정하고, 1차 2014년 9월, 2차 2015년 9월, 3차 2015년 12월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1차에 해당하는 ①, ②, ⑥, ⑧, ⑬번 Action Plan(아래 <표.1.> 참조)에 대해 2014년 3월 24일까지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에 의해 빠르게 진척된 주요 조세 문제를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가능성 있는 해결점을 요약한 Discussion Draft를 발표
 - 이에 대한 각국의 검토(Comments)를 2014년 4월 14일까지 받고, 최종 리포트를 2014년 9월에 발간함.

33) cf. ACCA, 'The digital economy: OECD's consultation on tax challenges', 2014. 06.

34) 김태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조세정의의 실현", OECD Korea, 2014. 09. 19

3) OECD의 BEPS Action Plan의 내용과 추진 시한

○ OECD가 2013년 7월 발표한 5개 분야, 15개 사항의 BEPS Action Plan은 다음과 같음.³⁵⁾

표 1 BEPS Action Plan 주요 내용과 추진 시한		
분야	주요 내용 및 목표	추진시한
(1) 디지털 경제	①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문제 해결(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 디지털 경제에서의 사업특성 파악 및 조세문제 해결방안 모색	'14.9 ³⁷⁾
	② 혼성불일치 효과 중화(Neutralize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 국가간 과세 취급이 다른 상품, 실체,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중 공제문제 등의 효과적 대응 ³⁸⁾	'14.9
(2) 기업 소득과세 국 제적 일관성 확보	③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과세(CFC)제도 강화(Strengthen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 저세율국에 자회사 설립하여 소득의 이전·유보로 과세회피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 세하는 CFC 제도 강화	'15.9
	④ 금융비용 공제 제한(Limit Base Erosion via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 과도한 금융비용 공제로 인한 세원 잠식 문제의 대응책 마련	'15.9
(3) 국제 기준의 효력 강화	⑤ 유해 조세제도에 대응(Counter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조세제도에 대한 총체적 검토	'14.9 '15.12 '15.12
	⑥ 조세조약 남용방지(Prevent Treaty Abuse) - 부적정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	'14.9
	⑦ 고정사업장 구성의 인위적 회피 방지(Prevent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 PE ³⁹⁾ 유무에 따라 외국법인 등의 원천소득 과세권 결정 - 위탁판매 계약 등을 통한 PE 회피 방지를 위해, PE 개념 변경	'15.9
	⑧ ~ ⑩ 이전가격세제 강화(Assure that Transfer Pricing Outcomes are in Line With Value Creation) - ⑧ 무형자산 이전(Intangibles), ⑨ 위험·자본의 이전(Risks and Capital), ⑩ 기타 고위험 거래 관련 (Other High-Risk Transactions)	'14.9 '15.9 '15.12
	⑪ BEPS 자료 수집·분석방안 개발(Establish Methodologie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on BEPS and the Actions to Address It)	'15.9
(4) 투명성 확보	⑫ 조세회피 거래 등에 대한 보고제도 개발(Require Taxpayers to Disclose Their ATP Arrangements)	'15.9
	⑬ 이전가격 자료제출요건 재검토(Re-examine TP Documentation) -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소득분배 등의 정보 제공 방안 마련	'14.9
(5) 신속한 이행	⑭ 조세조약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상호합의절차 개선(Mak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15.9
	⑮ 액션플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Develop a Multilateral Instrument)	'14.9 '15.12

35)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02719-en>

36) 디지털 경제 작업반은 2015년 말까지 작업이 연장됨.

37) * (예) 전환사채를 A국은 사채, B국은 자본으로 취급시, A(발행)국에서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B(인수)국에서 해외배당소득으로 비과세 가능

38) Permanent Establishment

- 위의 Action Plan에서 ‘구글세’관련 부분은 특히 (1) 디지털 경제 분야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문제 해결’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부분임.
 - 작업 결과물의 형태는 주로 모델조세조약(Model Tax Treaty) 및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의 개정, 국내법 개정 권고안(Recommendation), 관련 독립보고서(stand alone report) 등으로 예상
 - BEPS Action Plan의 작업 추진 산출물이 다자적 협정, 또는 이행 수단(Multilateral Instrument)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미확정 상태
 - 다만 BEPS의 모든 작업 결과물을 담아 회원국들이 한번의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BEPS 액션 플랜의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다자적 협정 또는 이행 수단의 목표임을 재확인.³⁹⁾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 프로젝트는 OECD 회원국은 물론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G20의 비 OECD 경제대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중요⁴⁰⁾.
- 향후 조세 회피 차원의 ‘구글세’문제는 각국 간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전망

V. 국내 ‘구글세’ 관련 동향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 국내에서는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는 논의가 되지 않음
 - 해외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인 구글에 대한 국내 신문, 출판물 위시하여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검색 및 유통 사업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음
 - 국내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우는 국내 50여개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됨.⁴¹⁾
 - 구글의 경우 콘텐츠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⁴²⁾
 - 이것은 우선 우리나라의 검색 포털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기업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어서 외국 검색사업자인 구글에 이와 관련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
 - 하지만 프랑스나 벨기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구글 검색서비스의 콘텐츠 사용료 문제는 제기되어야 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함.

39) 김태호,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OECD Korea, 2014. 04

40) 김태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조세정의의 실현”, OECD Korea, 2014. 09. 19

41) 네이버 측 “우리는 신문사 등 언론사들과 정식으로 계약하고 해당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 독자들에게 노출 시키고 있다. 뉴스 스탠드는 해당 언론사에 편집권까지 제공하고 뉴스 홈에 노출되는 50여개 언론사에는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cf. 조선비즈, “구글세 받는 스페인 언론 “뉴스는 공짜 아니다””, 2014. 11. 05.

42) 관련 신문업계의 관계자 증언

2.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국내에서도 구글의 독과점 문제,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구글의 비과세 문제 등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도 뒤늦게 ‘구글세’논의가 대두되고 있음⁴³⁾
 - 법인세 관점에서 국내에서 구글 코리아는 유한회사로서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규모, 세금규모 등은 비공개
 - 현재 구글 코리아는 국내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⁴⁴⁾
-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 의하여 구글,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과 음원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발표⁴⁵⁾
 - 지난 2010년부터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 증가 및 앱 마켓 사업의 급성장에 따라 국내 앱 마켓인 T스토어와 네이버앱스토어 사업자와 앱 개발사들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왔음.
 - 그리고 해외 앱 마켓(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국내개발자가 앱을 판매한 경우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 하지만 해외 앱 마켓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앱 콘텐츠 구매 시 해외 개발자나 해외 앱 마켓은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 발생.(일본의 경우와 유사)
 - 이에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앱 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앱, 음원, 영화파일 등)에 대해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2015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VAT) 과세 방침

표 2 부가세법 개정안 비교표⁴⁷⁾

현행	개정안						
○ 국내 앱마켓 구매시							
- 국내개발자 앱: 국내 개발자 신고, 납부	동일						
- 해외개발자 앱: 국내 앱마켓사업자 등이 신고, 납부	동일						
○ 해외 앱마켓 구매시							
- 국내개발자 앱: 국내 개발자 신고, 납부	동일						
- 해외개발자 앱: 해외 개발자, 해외 앱마켓사업자 모두 납부하지 않음	- 해외개발자 앱: 해외 앱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부과세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앱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앱 개발자</th> <th>VAT 납부의무자</th> </tr> </thead> <tbody> <tr> <td>국내</td> <td>개발자</td> </tr> <tr> <td>해외</td> <td>앱마켓(구글·애플 등)</td> </tr> </tbody> </table>	앱 개발자	VAT 납부의무자	국내	개발자	해외	앱마켓(구글·애플 등)
앱 개발자	VAT 납부의무자						
국내	개발자						
해외	앱마켓(구글·애플 등)						

43) 경향신문, “구글 독주’방치한 정부에 인터넷업계 ‘부글’”, 2014. 10. 26

44) 경향신문, 위의 기사.

45) 기재부, ‘2014년 세법개정안’, 2014. 8. 6., p. 133

46) 출처: 기획재정부, □년 세법 개정안’, 2014. 8. 6.

- 우리나라의 적용방법은 역내·외 사업자로 하여금 온라인 사업자등록(MOSS)을 하게하고 앱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채택
 - 유럽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영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 장소는 소비자의 소재지로 보며, 앱 마켓이 사업자 등록지국에 각국 전체 앱 소비분 부가세 납부, 등록지국은 소비지국에 부가세 배분하는 방식 채택⁴⁷⁾

VI. 결론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개념을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각국 차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신문, 출판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합의⁴⁸⁾
 - 독일, 스페인은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법제화 시행
 - 이는 콘텐츠 분야의 유통에 관련되는 유통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산업에의 기여 필요성에 대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요구와 주장이 정당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
-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글 등에 대해 콘텐츠 사용료 지불 요구 필요
 -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등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 가능성
 - 특히 구글이 모바일 검색 등을 통한 광고 수익을 높여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
- 우리나라도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기금 마련 가능성 타진 필요
 - ‘구글세’를 저작권료 관점이나 콘텐츠사용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각 해당 콘텐츠 기업에 수익 발생
 - 하지만 ‘구글세’를 프랑스와 같이 기금의 형식으로 합의하는 경우, 콘텐츠산업 진흥기금으로 조성가능

2.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법인세 관점
 - 최근 들어 구글 등의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대한 법인세 문제는 유럽이 중심이 되어 OECD의 BEPS 프로젝트의 가동으로 대책 마련의 가능성이 열림.
 - OECD는 2014년 9월 17일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회피를 막고 정당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다자간 협

47) 노르웨이의 경우는 해외공급자(앱 마켓)에 대한 간단한 사업자등록제도를 시행하였고, 캐나다의 경우 소비자 자진신고(self assessment)제도를 시행했으나, 노르웨이의 경우는 세수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나, 캐나다의 경우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음. cf. OECD, 디지털경제제작업반, 논의내용 민간공개 및 민간공청회 준비, 제 2차 디지털경제제작업반(Digital Economy Task Force) 회의 결과

48) 프랑스는 검색엔진(구글)과 콘텐츠 생산자의 가치 배분으로서의 ‘구글세’는 부담금 징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뉴스 서비스에 관한 언론사와 검색엔진 간 계약과 같이 콘텐츠별로 검색 엔진과의 협약에 의한 수익배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cf. Pierre LESCURE, Culture-acte2, Contribution aux politiqu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2013. 5.

정 초안을 공개.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으로 불리는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ECD에 의하면 역내 34개국,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10개국이 규제 초안에 동의.⁴⁹⁾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국내에서도 공론화를 통한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구글 코리아 등의 매출과 수익 공개를 요구하고 조세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임하도록 여론 조성하는 것이 필요

○ 부가가치세 관점

- 2014년 들어 세계 각국들이 구글, 애플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도입
- 우리나라도 201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⁵⁰⁾
- 2014년부터 부가세가 도입되는 국가들에 대해 구글 사이트에서는 개발자들에게 부가세 과세에 대해 알리고 반영된 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⁵¹⁾
- 기재부에서는 “구글과 애플은 각국 과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어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
-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법상의 지속적인 보완 필요.⁵²⁾

○ 2015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부가가치세 징수와 여론 조성을 통한 구글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그리고 저작권료 혹은 콘텐츠사용료 관점의 ‘구글세’ 징수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49) 2014. 09. 17 전자신문

50) 2014. 12. 03 디지털 타임즈

51) 현재 부가세가 앱 판매금액에 포함돼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으로 구글플레이가 작동중인 140여 개국 중 20% 가량이 부가세를 구글 장터를 통해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이 국가 리스트에 나타나 있지 않음.

52) 정지선, '플랫폼 산업에서의 규제 형평성 확보 위한 정책 제언',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4. 09. 18., p.43

참고문헌

- 권호영,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8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 개정안’, 2014. 8. 6.
- 김영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산업진흥 기금: 상상콘텐츠 기금과 프랑스 ‘문화세’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vol. 14, no. 2.
- 김태호,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OECD Korea, 2014. 04
- 김태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조세정의의 실현”, OECD Korea, 2014. 09. 19
- 박종수, ‘플랫폼 산업에서의 규제 형평성 확보 위한 정책 제언’,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4. 09. 18
- 세계법제정보센터, 서유럽, 프랑스,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
- 안종석,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07
- 안종석,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7. 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Google과 유럽 정부간 ‘구글세’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향방”, ‘KCA 동향과 전망’, 통권 제63호, 2013. 06
-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2014. 02. 25., NewsBrief, 2014. 10. 06
- 경향신문, “구글 독주방치한 정부에 인터넷업계 ‘부글’”, 2014. 10. 26.
- 디지털 타임즈, 2014. 12. 03
- 전자신문, 2014. 09. 17
- 조선비즈, “구글세 받는 스페인 언론 “뉴스는 공짜 아니다””, 2014. 11. 05., 2014. 11. 27
- 조선일보, 2014. 08. 21
- ACCA, ‘The digital economy: OECD’s consultation on tax challenges’, 2014. 06.
- Bernard Pulle,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 Australian Government initiatives to avoid erosion of corporate tax base”, Parliament of Australia,
- <http://bigstory.ap.org>, “Google faces up to image problem in Europe”, 2014. 05. 30
- <http://theregister.co.uk>, “Australia to reveal tech giants’ tax tricks”, 2013. 04. 03
- James Vincent, “Spain’s ‘Google Tax’”, <http://www.independent.co.uk>, 2014. 08. 19.
- Julio Alonso, “The Story of Spain’s Google Tax”, 2014. 07. 27, in <https://medium.com/@JulioAlonso>
-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http://dx.doi>.

org/10.1787/9789264202719-en

OECD (2014),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OECD/G20 BEPS Project, OECD Publishing

Pierre Lescure, Culture-acte2, Contribution aux politiques culturelles à l'ère numérique. 2013. 5.

Telegraph, “German ‘Google Tax’ to force search engines to pay for showing news extracts”, 2013. 03. 01.

The Guardian, “What is the ‘Google tax’?”, 2014. 9. 29., 2014. 10. 31

The Register, “Google avoids tax with ‘Double Irish Dutch Sandwich’”, 2012. 11. 22.

The Sydney Morning Herald(smh.com.au), “Google Australia’s tax bill jumps tenfold”, 2014. 05. 01